



제427회국회(정기회)
제3차 환경노동위원회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< 한국어 보수교육 신설 등 >

■ 김상훈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3014호)

2025. 11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전문위원 한석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한국어 보수교육 신설 등	2

I. 제안경위

2025년 9월 16일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, 시행령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827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102명(12.3%)에 이르고 있고,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꼽히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과 보수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제조업, 건설업,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·안전수칙·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김정기준 등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,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

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7조 등).

Ⅲ. 검토의견

1. 한국어 보수교육 신설 등

가. 개정안의 주요내용

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선발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영역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취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며,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7조 등)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7조(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) ① (생략)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<u>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</u> (이하 “한국어능력시험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, 평가의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제7조(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말하기·듣기·읽기·쓰기 등 한국어 구사능력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<신 설>

<신 설>

③ · ④ (생 략)

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
기관은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
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

-----.

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다음 각 호
의 내용으로 실시한다.

1.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
2. 제조업, 건설업, 농축산업 등
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
· 안전수칙 · 상황별 대처능력
등 맞춤형 검정기준
3. 그 밖에 취업 및 한국 생활 적
응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
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
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「한국산업인력공단
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(이
하 “한국산업인력공단”이라 한다)
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
취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직무
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
육을 매년 1회 이상 받게 하여야
한다.

⑤ · ⑥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
같음)

⑦ 제6항-----
-----한국산업인력공단-----

“한국산업인력공단”이라 한다)으 로 하며,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3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u><신 설></u> 1. (생 략) 2. ~ 10. (생 략) ② (생 략)	----- -----. 제32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. 1.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의2. (현행 제1호와 같음) 2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

나. 검토의견

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17개의 송출국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가 주관하여 듣기 및 읽기 2개 영역으로 된 객관식 4지 택일형 필기시험 형태로 총 40문항의 한국어시험(EPS-TOPIK)을 실시하고 있고, 업종별 최저 하한 점수 이상 득점자로서, 선발(예정)인원만큼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음.

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

직후 취업교육기관에서¹⁾ 외국인 취업교육을²⁾ 받고 각 사업장으로 배치되며, 이후부터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에 따른 정기교육과 채용시 교육 등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교육을 받음.³⁾

개정안은 현재 듣기 및 읽기 2개 영역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시험을 말하기·듣기·읽기·쓰기로 세분화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시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며,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이후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취업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.

다만, 안 제7조제2항은 한국어능력시험이 송출국가에서 연간 50만 명이 응시하는 시험으로서⁴⁾ 대규모 응시인원에 맞게 듣기와 읽기 영역으로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, 각 송출국의 한국산업인력공단 EP

1) 중소기업중앙회(제조업 등), 농업협동조합중앙회(농축산업), 대한건설협회(건설업) 등

2) 제11조(외국인 취업교육)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(周知)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(이하 “외국인 취업교육”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,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3)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) '23년 492,399명, '24년 543,510명

S센터의 인력과 예산,⁵⁾ 시험 시행 장소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말하기와 쓰기 영역 시험의 시행과 채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,

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을 명시한 안 제7조제3항은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된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시행되는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내용과 유사하여 개정의 실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,⁶⁾

외국인 고용허가를 받는 사용자 대부분이 내국인 근로자 구인에 실패한⁷⁾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인데 이들에게 지속적인 보수교육의 의무를 지우고,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고용노동부는 ①한국어능력시험에 연간 약 50만명이 응시하고 있어 말하기·쓰기 능력을 한국어능력시험 평가항목으로 도입하기가 쉽지 않

5) 현재 한국어 시험 응시 수수료는 28USD로, 개정안과 같은 시험 운영의 실비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응시수수료를 올리거나 정부 출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

6) 제13조④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

7) 제6조(내국인 구인 노력)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(이하 “직업안정기관”이라 한다)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·지원하여야 하며,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.

제8조(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)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고, ②시행령 제13조제4항을 토대로 '24년 한국어 표준교재를 전면 개편하고, '25.8월부터 제조업·건설업 등 업종별로 직무용어 등을 반영한 문제 출제 등 맞춤형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미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 및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③현행법 제11조 등에 따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·후 한국어, 산업안전 등 취업 의무교육을 실시 중이고, 8)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산업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(반기별 1회), 산업인력공단·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·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한국어 교육과 9) E-9 특화훈련 등 10) 직무 관련 별도 훈련 기회도 제공하는 등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한국어, 산업안전 관련 의무교육과 함께 다양한 훈련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만 추가적으로 의무교육을 신설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, 교육을 의무화하는 경우 영세·중소기업의 추가부담은 크게 작용할 수 있고,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담케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
8) 입국 전 취업교육(47시간) 중 한국어 38시간, 산업안전 3시간
입국 후 취업교육(16시간) 중 한국문화 1시간, 산업안전 5시간

9) ▶산업인력공단: 총 48시간, 주말 무료교육, 수준별(기초, 심화, 토픽 대비반) 과정
▶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: 총 30시간 내외, 지역별 특화 과정(예: 말하기, 듣기 등)
▶온라인 교육 플랫폼: 총 102시간, 업종별 특화 한국어 교육 VOD 등 제공

10) ▶E-9 특화훈련: 입국 초기 '한국어+산업안전+직무기초'로 구성된 종합 훈련과정 지원
▶재직자 직업훈련: 주말을 활용한 5개 직종의 기초 직무수행능력 향상 지원

문 의 처
02)6788-5545